

학생단체 등록·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원예술대학교 학칙 제45조 및 학생준칙 제3장에 의하여 예원예술대학교 학생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단체란 본교 학생회 산하 부서에 있거나 또는 각 동아리, 향우회, 동문회 등을 말한다.

제3조(등록요건) 단체로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2. 소속단체의 설립목적과 이념에 찬동하는 20명 이상의 입회원서를 제출한 정규회원을 가져야 한다.
3. 단체의 설립목적 및 활동범위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지도교수를 선정하고 위임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4조(등록 구비서류 및 절차) ① 학생단체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단체승인신청서(소정양식)
2. 지도교수 취임승락서(소정양식)
3. 회칙
4. 활동계획서 및 예산서(소정양식)
5. 발기인 명단
6. 발기인총회 회의록

② 학생단체등록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단체로서 신규등록 하고자 할 때에는 전항의 구비서류를 작성,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입학홍보처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07.9.1.><개정 2021.7.22.>
2. 학생종합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단체 및 기존단체는 재등록 할 수 있다.
3. 학생종합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친 모든 단체는 그 기간 중 건학이념이나 목적에 위배 시에는 등록을 취소하고 2년간 재등록할 수 없다.

제5조(효력) 제3조, 제4조에 의거 학생단체등록을 필한 단체는 입학홍보처장이 공고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개정 2021.7.22.>

제6조(임원선출, 임기, 결원보고) ① 각 단체의 임원은 소속단체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다만, 임원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명단을 지체없이 입학홍보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7.22.>

② 임원의 임기는 학생회 임기와 같다.

③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 즉시 보선하여 그 결과를 입학홍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7.22.>

제7조(지도교수) ① 지도교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단체로부터 추대 받아 입학홍보처장을 경유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12.4.><개정 2021.7.22.>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의 단체 지도교수를 겸할 수 없다. 다만, 향우회, 동문회 중 1개만 겸직이 가능하다.

③ 지도교수는 소속단체의 모든 행사에 참석하여야 하며, 그 단체의 활동을 책임 지도하여야 한다.

④ 지도교수의 장기출장으로 인하여 다른 교수에게 일정기간 대리업무를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입학홍보처장에게 추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1.7.22.>

⑤ 지도교수가 사임하였을 경우에는 사표수리 10일 이내에 위임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취임승낙서를 입학홍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학홍보처장은 특별한 사정으로 지도교수를 선정하지 못한 동아리에 대하여 지도교수를 지정 총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1.7.22.>

제8조(재정) ① 단체운영의 재정은 회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부의 재정보조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입학홍보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7.22.>

② 입학홍보처장은 필요한 단체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7.22.>

③ 단체지원을 위한 학생회비 및 학교보조금은 학생종합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배정하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1. 본교 설립목적과 전통의 확립성의 부합성
2. 전교생에 대한 학술적, 교육적 공헌
3. 과거 1년간 행사실적<개정 2007.09.01>
4. 전체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
5. 당해 연도 행사계획의 건전성

제9조(단체의 활동) 제 단체의 활동시 준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된 제 단체는 학교행사 또는 학생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 모든 행사는 제10조에 의한 집회허가원을 입학홍보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학부(과)별 교내 학생단체 행사는 소속 학부(과)장이 허가하고, 이 사항을 입학홍보처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7.22.>
3. 단체의 집회가 정상수업과 중복될 때에는 해당 학부(과)장의 확인과 입학홍보처의 수업처리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7.22.>
4. 야간 옥외 집회 시에 햇불, 모닥불 등을 피우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의견서를 첨부, 사전에 입학홍보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7.22.>
5. 집회에 관한 게시물, 현수막, 프로그램, 티켓, 기타 유인물의 제작은 초안을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사전지도와 입학홍보처장의 허가를 받은 후 제작, 인쇄하여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7.22.>
6. 모든 게시물은 규격1호(53×76), 2호(90×60)로 한정하고 입학홍보처장의 허가를 받은 후 지정게시판에 부착한다.<개정 2021.7.22.>
7. 매 학기 중간 및 기말시험 1주일 전부터 시험 종료시까지 각 단체의 행사 및 집회는 허가되지 아니한다.
8. 각 단체는 각 행사완료 후 5일 이내에 결산 및 활동보고서를 입학홍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7.22.>

제10조(집회허가원의 제출절차) ① 학부(과)단위의 학생행사인 경우

1. 학생대표가 학부(과)장 동의를 받아 집회허가원 및 기타 서류를 입학홍보처에 제출한다.<개정 2021.7.22.>

2. 학생회비 요청시에는 입학홍보처를 경유하여야 한다.<개정 2021.7.22.>

② 학생단체(동아리) 단위의 학생행사인 경우

1. 학생단체 대표자는 지도교수로부터 집회허가원의 동의를 받아 입학홍보처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21.7.22.>

2. 학생회비 요청 시에는 총학생회장을 경유하여, 입학홍보처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21.7.22.>

③ 타 대학과의 연합행사인 경우 : 다른 학교와의 연합행사인 경우 단체대표자는 해당 지도교수의 집회허가 동의를 받아 집회허가원 및 기타서류를 입학홍보처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21.7.22.>

제11조(집회허가원 제출기일 및 구비서류) ① 단체의 정기(월례 및 주례) 집회는 계획서를 제출하여 일괄적으로 승인을 받으며, 별도의 집회 허가 없이 시행할 수 있다.

② 교내집회는 5일전, 교외집회는 7일전에 집회허가원을 제출한다.

③ 다른 학교와의 연합행사인 경우에는 20일 전에 행사계획서, 예산서, 대표학생 서약서, 참가교 동의서 그리고 홍보물제작 배부허가원을 첨부한 집회허가원을 입학홍보처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21.7.22.>

제12조(게시물 부착) 본교 학생 및 단체의 집회에 관한 게시물 부착은 학생준칙 제4장 및 학생홍보(게시)물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3조(간행물 발간허가신청) ① 본교 학생이 발간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 간행물은 인쇄물 발간 허가원에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입학홍보처장에게 제출,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2021.7.22.>

② 정기, 부정기 간행물의 편집, 인쇄, 배부는 학칙 제48조에 의거한다.

③ 기타 자세한 것은 학생홍보(게시)물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4조(봉사활동) 제 단체의 봉사활동시 준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봉사활동은 수업시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학생회에 등록된 단체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개시 20일 전에 계획서를 교학지원처장에게 제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봉사활동의 사회봉사 학점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경우 구비서류를 작성, 관련부서를 경유 교학지원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봉사활동에 참가하는 단체나 개인은 학교의 지시나 사전 교육을 필하여야 한다.
5. 봉사활동시 학교로부터 허가받지 않는 활동은 할 수 없다.
6. 봉사활동 완료 후 4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교학지원처에 활동보고서를 제출한다.

제15조(단체의 자격상실) ① 등록된 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시킨다.

1. 학칙, 학생준칙 또는 본 규정을 위반하거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단체
2. 교·내외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학생종합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 단체
3.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단체를 위하여 활동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4. 단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여 목적 외 활동을 하는 단체
5. 1년간 행사 실적이 전혀 없거나 극히 부진한 경우

② 활동 및 성격이 유사한 단체는 학생종합복지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통·폐합 할 수 있다.

③ 단체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 그 단체의 대표자는 회원 과반수로부터 해체결의서에 서명을 받아 해체 사유와 지도교수 의견서를 첨부 입학홍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7.22.>

제16조(개정) 이 규정을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종합복지위원회의 결의(재적위원 과반수 찬성)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학생종합복지위원회가 결의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2000. 3. 2)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0. 6)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9.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2. 1)

4-5-4-3 학생단체 등록·운영에 관한 규정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2. 4)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7. 22)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